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규정

- 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명칭) 본 연구비의 명칭은 (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) 라고 한다.
- 제 3 조 (지급) 본 연구비 지급대상은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 연구비는 각 연제 당 500 ~ 2,000 만원 내외로 한다. 단, 연구비의 규모는 연구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제 4 조 (지급대상자의 자격)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정회원(공동연구자 포함) 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 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.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.
- 제 5 조 (구비서류)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외과대사 영양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지원 신청서
 - 2) 연구 과제 계획서
 - 3) 연구비 소요 예산서
 - 4)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
- 제 6 조 (연구과제 심사) 연구과제 심사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연구이사,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- 제 7 조 (연구과제 결정)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에 공고한다.
- 제 8 조 (연구비 지급)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 시 50%를 지급하고, 나머지 연구비 50%는 연구과제 진행이 50% 되었을 시 연구자 요청에 의한 연구 중간보고 혹은 학술대회 중간보고 발표 등을 통해 연구위원회 동의 하에 지급한다.
- 제 9 조 (연구 중간보고) 중간보고서와 각 기관의 IRB 승인서, 연구비 중간 사용 내역서,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0 조 (연구 종료) 연구 종료 시 종료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연구 기간) 연구과제 계약서 작성 시부터 학회지 투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 12 조 (연구 기간 연장) 연구자가 연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연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) 연구위원회는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구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- 제 13 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 연구결과는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하며,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지에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연구비 환수)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12조 연구 기간, 제13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.

부칙

- 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- 2) 본 규정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의 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